



대학발전기획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16
제정일자	2013.06.17
개정일자	2017.09.01
개정번호	Ver.2
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대학발전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구성)**
-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행정부서 처장과 기획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촉직 위원의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 단,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.

1.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
2. 매 학년도 대학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3. 대학 정책에 관한 사항
4. 대학 만족도 조사 및 교직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 발전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거나 위원 1/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

- 제4조(회의 소집 및 의결)**
- ①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통보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, 회의록은 참석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- 제6조(사무)**
-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 - ②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본 규칙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위촉직 위원들의 최초 임기는 제2조(구성) ③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본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본 규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